

생활안정자금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, 한도 등을 개선하여 취약 노동자의 생활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2.3.(수) 세계일보(온라인), “현실 모르는 지원정책의 말로... 정부, 결국 대출한도 4배로 올린다” 기사 관련

2. 설명 내용

- ‘생활안정자금(융자) 이차보전제도’는 생활안정이 필요한 취약노동자를 확대·지원하기 위해 '25년 5월에 신설·도입하였음

* 지원대상: ▲(직접융자방식)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 ▲(이차보전방식) 2분의 1 초과 ~ 중위소득 이하
↳ 이차보전방식: 민간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최대 3%p까지 이자 일부 지원

- 다만, 도입 초기 운영에 있어 이차보전이 가능한 신용대출 한도가 제한적이라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음

○ 그간 낮은 집행 추이와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, 취약 노동자가 손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와 융자 항목 확대 등 개선*을 추진(행정예고 12.1.~12.14.) 중에 있음

* ①혼례비와 자녀양육비의 상한을 최대 2,000만 원으로 상향

②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를 생활안정 융자 종목으로 추가 등

- 동 제도가 취약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신속히 완료하고 적극적 홍보도 병행하는 등 생활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	책임자	과 장	이준호 (044-202-7554)
		담당자	사무관	정재숙 (044-202-7561)